

대법원 2019도13416 공직선거법위반등 보도자료 - 부산 중구청장 윤종서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28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고, 재산내역이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416 판결)**

1. 사안의 개요¹⁾

(1) 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24.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2018. 5. 24.부터 2018. 5. 27.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허위 게시되게 함

(2)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1) 이하 이 사건 상고심의 실질적 심판대상인 **피고인의 공직선거법법 위반 부분에 한하여 정리함**

-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부분도 상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민등록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이 판결로 함께 상고기각)

피고인 소유의 뉴남포빌딩 B101호 및 902호의 신고가 누락된 것을 2018. 5. 27. 알게 되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허위 게시된 재산 총액이 그대로 2018. 6. 13.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 총액이 허위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25,515부를 제작하여 2018. 6. 1. 중구선관위 및 중구 관내 동별 주민 센터에 제출함으로써, 2018. 6. 2.부터 2018. 6. 3.까지 사이에 중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함

2. 소송경과

가. 1심

- ▣ 벌금 150만 원(예비적 공소사실), 이유무죄(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 및 검사 항소

나. 2심

- ▣ 쌍방 항소기각 → 피고인과 검사 각 상고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8. 5. 24.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게시된 자신의 재산 총액을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신고된 것과 동일한 재산 총액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함

3. 대법원의 판단

-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 → 원심 판결 확정

4.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은 이 판결로써 부산중구청장 직위를 상실함²⁾

2)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